

# 안전망 대출 II에 따른 추가약정서

본인은 귀행과 체결한 2023년 11월 15일자 『대출거래약정』(이하 “대출약정”이라 한다)에 추가하여 귀행 및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(이하 “기금”)과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.

## 제1조(보증부대출)

본인이 귀행과 체결한 대출약정은 기금이 발급하는 신용보증서를 기초로 한 대출임을 확인하고 다음의 사항에 동의합니다.

## 제2조(대출이자 및 보증료의 계산)

- 본인이 귀행 및 기금에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대출원리금과 보증료를 합한 총 상환금은 대출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율( )과 보증료율( )을 합한 율( )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.
-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이 귀행에 매월 납입하여야 할 대출원리금과 보증료를 합한 월상환금을 매월 성실히 납부하기로 합니다.

## 제3조(보증료 납입)

본인은 대출약정에서 정한 매 회차별 대출원리금 상환시 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보증료를 동시에 납부하기로 합니다.

## 제4조(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)

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제2항제2호에 불구하고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채무자는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.

## 제5조(상환유예 및 만기연장)

- 본인은 정상상환하고 있는 중에 실직, 질병, 사고 또는 소득감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행에게 최대 2년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상환유예 기간 중에는 대출이자와 보증료만 납부하고 원금상환은 유예됩니다.
- 귀행이 상환유예 결정을 통보한 때에는 기금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더라도 기금의 신용보증 조건은 해당 상환유예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.
-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귀행 사이에 상환유예 방법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를 수 있습니다.

## 제6조(추가약정의 효력)

이 추가약정서에서 정한 사항은 대출약정, 본인과 기금이 체결한 보증거래약정 및 귀행 또는 기금의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.

## 제7조(보증료 자동이체)

본인은 대출금 이자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, 보증료를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출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수납처리 하여 줄 것을 신청 하며, 보증료 자동이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출은행의 자동이체 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.

## 제8조(기타)

이 추가약정서는 본인과 귀행 및 기금을 대리한 귀행이 체결한 것입니다.

본인은 귀행과 『대출거래약정』을 체결함에 있어, 이 추가약정서의 모든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합니다.

2023년 11월 15일

본인(대출받는자) 성명 : (인)  
생년월일 :  
주소 :

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및

은행 귀중

이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